

개식용 판매업자 대상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공고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이 2024. 2. 6. 제정됨에 따라, 제10조(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) 및 「개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」의 주요내용을 개식용 판매업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

- 아 래 -

- 근거법령: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
- 주요내용

가. 개식용 목적 유통·판매 및 판매시설 신규 운영 금지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개의 식용 목적 사육·도살·유통·판매 금지)

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(사체 또는 식육(食肉)을 포함한다)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·가공한 식품을 유통·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)

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개사육농장
2.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·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·판매하기 위한 시설
3.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·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

나. 개식용 판매업자 운영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

제10조(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)

- ①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, 주소,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.

(1) 제출대상: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, 도축·유통 상인 및 식품접객업자

(2) 제출방법: 업종별 개식용 운영 신고 안내문(붙임 3) 참고

(3) 제출기한: (운영 신고) ~ '24. 5. 7. / (이행계획서 제출) ~ '24. 8. 5.

※ 기한 내 미신고·미제출 시, 전·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될 수 있으며, 추후 영업장 폐쇄 혹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

(4) 제출처: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영등포구보건소 3층 원스톱위생민원실

3. 공고기간: 2024. 4. 8. ~ 2024. 8. 5.

4. 문의사항: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이예란 주무관 / ☎ 02-2670-4716

붙임 1.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1부.

2.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-14호)」 1부.

3. 업종별 운영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. 끝.